

Ⅲ 건축 전기설비 법규 검토서

조항	항목	대상	법규내용			검토결과
건축법 제64조 시행령 제89조	승강기	설치기준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	3,000㎡ 이하	3,000㎡ 초과	-[건축첨부-1] (AA-603~762 주동평면도) : 적법하게 설치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 : ·901동 : 5,011.802㎡ ·902동 : 7,244.168㎡ ·903동 : 6,603.610㎡ ·904동 : 8,859.782㎡ ·905동 : 4,802.725㎡ ·906동 : 5,592.510㎡ ·907동 : 5,219.676㎡ ·908동 : 3,777.034㎡ ·909동 : 5,294.146㎡ ·910동 : 3,981.198㎡ ·911동 : 5,920.756㎡ ·912동 : 391.340㎡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1대	1대 + {(A-3,000) /2,000}	-법정 설치 기준 : ·901동 : 1+(5,011.802-3000) /3000 = 1.67대 ·902동 : 1+(7,244.168-3000) /3000 = 2.41대 ·903동 : 1+(6,603.610-3000) /3000 = 2.20대 ·904동 : 1+(8,859.782-3000) /3000 = 2.95대 ·905동 : 1+(4,802.725-3000) /3000 = 1.60대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의료시설 (병원 및 격리병원에 한한다)	2대	2대 + {(A-3,000) /2,000}	·906동 : 1+(5,592.510-3000) /3000 = 1.83대 ·907동 : 1+(5,219.676-3000) /3000 = 1.74대 ·908동 : 1+(3,777.034-3000) /3000 = 1.26대 ·909동 : 1+(5,294.146-3000) /3000 = 1.76대 ·910동 : 1+(3,981.198-3000) /3000 = 1.33대 ·911동 : 1+(5,920.756-3000) /3000 = 1.97대 ·912동 : 거실면적합계 3,000㎡이하 = 1대
			-공동 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기타 시설	1대	1대 + {(A-3,000) /3,000}	-계획 ·901동 : 15인승 2대/17인승 1대(4대) ·902동 : 15인승 3대/17인승 1대(5대) ·903동 : 15인승 3대/17인승 1대(5대) ·904동 : 15인승 4대/17인승 1대(6대) ·905동 : 15인승 1대/17인승 1대(3대) ·906동 : 15인승 3대(3대) ·907동 : 15인승 3대(3대) ·908동 : 15인승 2대(2대) ·909동 : 17인승 2대(4대) ·910동 : 15인승 1대/17인승 1대(3대) ·911동 : 15인승 1대/17인승 1대(3대) ·912동 : 15인승 2대(2대) ·옥외 승강기 : 장애인용 15인승 3대
			비고 1) A : 6층이 상의 거실면적 합계 2) 15인승 이하는 1대, 16인승 이상은 위 표에 의한 2대의 승강기로 본다.			

조 항	항 목	대 상	법 규 내 용	검 토 결 과		
건축법 제64조 시행령 제90조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규칙 (제10조)	비 상 용 기	설치기준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건축첨부-1] (AA-603~762 주동평면도) : 적법하게 설치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최대바닥면적 : ·901동 : 256.994㎡ ·902동 : 381.272㎡ ·903동 : 505.550㎡ ·904동 : 505.550㎡ ·905동 : 252.775㎡ ·906동 : 372.834㎡ ·907동 : 372.834㎡ ·908동 : 408.328㎡ ·909동 : 481.286㎡ ·910동 : 510.410㎡ ·911동 : 561.451㎡ ·912동 : 31m 이하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 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500㎡를 넘는 매 3,000㎡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하였는가?	-계획 ·901동 : 4대 / 902동 : 5대 / 903동 : 5대 / 904동 : 6대 / 905동 : 3대 / 906동 : 3대 / 907동 : 3대 / 908동 : 2대 / 909동 : 4대 / 910동 : 3대 / 911동 : 3대 / 912동 : 2대		
				승강장 구 조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설치하되, 갑종 방화 문을 설치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승강장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승강장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 설계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승강장은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승강장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이상으로 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피난 층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구 (승강장이 없는 경우 승강로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를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공동주택부분에서만 특별 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겸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PIT층(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층과 오피스텔, 상가층 사이에 각종 배관정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층)에도 비상용 승강장을 설치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조 항	항 목	대 상	법 규 내 용	검토결과
건축법 제64조 시행령 제90조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규칙 (제10조, 제14조)	비 상 용 기	승강기 운 행	-주택 외 부분에서는 비상시에만 운행되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는가?	적법하게 설치
		S.T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및 특별 피난계단 부속실에는 S.T를 설치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승강로 구 조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각층으로부터 피난 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되도록 하였는가? (복층구조, 기계식 주차장 포함)	적법하게 설치
		승강장 배연설비 구 조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는가?	적법하게 설치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칙2조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기준	장애이용 승강기	-설계대수는 몇 대인가?	-[건축첨부-1] (AA-603~762 주동평면도) : 적법하게 설치 -설계대수: ·901동 : 4대 / 902동 : 5대 / 903동 : 5대 / 904동 : 6대 / 905동 : 3대 / 906동 : 3대 / 907동 : 3대 / 908동 : 2대 / 909동 : 4대 / 910동 : 3대 / 911동 : 3대 / 912동 : 2대 ·옥외 승강기 : 3대
			-장애이용 승강기는 가능한 한 비상용 승강기와 경용을 피하였는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적법하게 설치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	적법하게 설치
			-전면에 1.4×1.4m 이상 확보	적법하게 설치
			-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 3Cm 이하	적법하게 설치
			-승강기는 폭 1.1m ,깊이 1.6m 이상, 출입구 통과 유효폭 0.9m 이상	적법하게 설치
			-0.3~1.4m까지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	적법하게 설치
			-모든 스위치는 높이 0.8~1.2m 이하로 설치하고, 승강기 내부 조작반은 진입 우측면에 0.85m 내외에 가로형으로 설치	적법하게 설치
			-조작반, 인터폰 등에 점자표지판 부착	적법하게 설치
			-승강기 내부에 수평 손잡이 연속설치, 내부후면에 개폐여부 확인 가능한 거울 부착	적법하게 설치
-승강장과 승강기 내부에 점멸등 및 음향음성 신호장치	적법하게 설치			
-각 층 승강기 호출버튼의 30cm 전면 점형블럭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법하게 설치			

조항	항목	대상	법규내용	검토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칙2조 [별표 1]	편의시설의 설치	휠체어 리프트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1.4×1.4m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사항 없음
			-승강장에는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 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운행 중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 시키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고정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 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m 이상, 길이 1.05m 이상으로 한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m이상, 길이 1.2m 이상으로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동주택 승강기	승용	-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6인승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였는가?	-[건축첨부-1] (AA-603~762 주동평면도) : 적법하게 설치 -15인승, 17인승 설치
		비상용	-10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화물용	-7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였는가?	적법하게 설치
			1)적재하중은 0.9톤 이상인가?	적법하게 설치
			2)승강기는 폭과 너비는 1.35m×1.6m 이상인가?	적법하게 설치
			3)계단실형인 경우 계단실마다 1대 이상 설치하였는가? 3.1)탑승인원 수는 4층 이상 층의 매세대당 0.3인(독신자 0.15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인가?	해당사항 없음
			4)복도형인 경우 100세대까지 1대 100세대를 넘는 경우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 설치하였는가? 4.1)탑승인원 수는 4층 이상 층의 매세대당 0.2인(독신자 0.1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인가?	적법하게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승강기 용도표기	표기방법	-용도표기를 다음 기준에 맞도록 도면에 명칭을 표기하였는가? ※순수한 승용승강기인 경우: 별도 표기하지 않음.	적법하게 설치
			- 승용 + 비상용 : 비상용 겸용	
			- 승용 + 화물용 : 화물용 겸용	
			- 승용 + 장애인용 : 장애인용 겸용	
			- 승용 + 비상용 + 화물용 + 장애인용 : 비상용, 화물용, 장애인용 겸용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33조	보안등	설치기준	-주택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였는가?	-[전기첨부-1] EE - 002 단지내 보안등 배선도 -보안등 설치함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였는가?	-[전기첨부-1] -설치간격: 40 m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였는가?	-[전기첨부-1] -자동 점멸기 부착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32조	통신시설	설치기준	-세대마다 거실 또는 침실까지 구내통신설비를 설치하였는가?	-[전기첨부-2] ET - 101~106 단위세대 구내통신 및 T.V 배선도 -설치함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였는가?	-[전기첨부-2] -월패드 설치함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 설비를 설치하였는가?	-[전기첨부-3] ET - 201~215 구내통신 및 TV설비 계통도 -설치함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40조	전기시설	설치기준	-전기시설 용량은 각 세대별로 3kw(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상인 경우 60㎡를 초과하는 10㎡마다 0.5kw를 더한 값) 이상인가?	세대당 3kw 적용 전세대 60㎡ 미만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42조	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	-텔레비전방송·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수신방송의 구내전송설비를 설치하였는가?	-[전기첨부-3, 6] -901동에 설치함

조항	항목	대상	법규내용	검토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 영 제20조	에너지사용 협의 대상 건축물	협의대상 및 조치	-협의대상(공공간사업주관자) · 연료 및 열 : 연간 2천5백 TOE 이상 사용 건축물 · 전 력 : 연간 1천만 kwh 이상 사용 건축물	-연료및열: TOE 전 력 : 425,278.8Kwh																				
			-협의대상(민간사업주관자) · 연료 및 열 : 연간 5천 TOE 이상 사용 건축물 · 전 력 : 연간 2천만 kwh 이상 사용 건축물	-연료및열: TOE -전 력: Kwh																				
			-건축허가 신청 전 지식경제부장관 사전협의	해당사항 없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영 제15조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대상 건축물	적용기준	-공공기관이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산 재생 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설치[2011.4.12까지]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 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다음 표 이상의 산 재생 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공급[2011.4.13부터]	-설치(공급)비율: 4% (민간건축물 2017년 주거적용) -설치(공급)비율: 7% (민간건축물 2017년 비주거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2011~2012</th> <th>2013</th> <th>2014</th> <th>2015</th> <th>2016</th> <th>2017</th> <th>2018</th> <th>2019</th> <th>2020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0%</td> <td>11%</td> <td>12%</td> <td>15%</td> <td>18%</td> <td>21%</td> <td>24%</td> <td>27%</td> <td>30%</td> </tr> </tbody> </table>	연도	2011~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연도	2011~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건축허가 신청 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설치 계획의 적합여부를 검토 받아야 함.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3조, 제14조	에너지성능 지표 검토서의 판정	의무사항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은 모두 이행 하여야 함.	- 반영함																				
		성능 지표 점수	-에너지 성능지표 권장사항은 평점합계가 86점 이상이 되어야 함.	- 비주거1 : 78점 - 비주거2 : 81.2점 - 비주거3 : 74.9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5조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제출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제출 - 비주거 :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1.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연구소, 업무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																					
			3.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4.목욕장, 실내수영장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이상인 건축물																					
			5.판매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																					
6.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																								
국토부고시 제2015-1108호 (2015.12.31)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효율 조명기기	-“조명등은 고효율 조명기기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는 문구 반영	-[전기첨부-4] EE - 006 조명기구 상세도 -반영																				
		건축단열	- 부위별 단열 두께, 단열재 등급 적합여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																				
			- 방습층 설치 및 설치방법 적합여부																					
			- 부위별 열관류율 계산 및 면적계산 적합여부																					
			- 평균열관류율 산출 적합여부																					
			- 단열선에 있는 창 및 문의 적합여부																					
			- 단열 평면도 적합여부																					
- 단열 단면도 적합여부																								

조항	항목	대상	법규내용	검토결과
국도부고시 제2015-1108호 (2015.12.31)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단열두께	-설계기준 별표-2의 단열재 두께를 준수하였는가?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
		열관류율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의 열관류율 값을 준수하였는가?	
		평균 열관류율	- 평균열관류율은 거실의 실내측 유효면적(안목치수)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는가?	
		방풍구조 출입문	-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였는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	배연설비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 시설에 쓰이는 거실(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	해당사항 없음
			1)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였는가?	
			2)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하인가?(단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함)	
			3)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100분의1 이상인가?	
			4)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하였는가?	
			5)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해 열 수 있도록 하였는가?	
			6)배연구 및 환기창 설치현황 산출표를 첨부하였는가?	
			7)환기창 및 배연구의 면적은 유효면적으로 산출하였는가?	
항공법 제83조 시행규칙 제247조	항공장애등	설치대상	-150m 이상의 건축물에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함. 단, 장애물 제한구역(공항인접지역)은 60m 이상의 건축물에도 설치하여야 함.	해당사항 없음
			-항공장애등 설비도면을 첨부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헬리포트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인 건축물에는 설치하여야 함.	해당사항 없음
			-헬리포트 중심으로부터 반경 12m 이내에는 TV 안테나, 피뢰침, 항공장애등 등 지장물이 없도록 설치하였는가?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해당사항 없음
방송 공동수신 설비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9조, 10조, 13조	설계 전 전파조사		-설계 전 수신전계강도 등 전파조사를 하였는가?	전파조사서 시행중 [전기첨부-13]예정
			-방송신호의 손실이 가장 많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 단자에서의 예상신호의 세기를 설계도서에 기재하였는가?	-[전기첨부-5] TV 전계강도 계산서
	신호전송		-수신안테나 방송신호를 주파수 변환 없이 전송하였는가?	변환 없음
	수신안테나		-수신안테나는 피뢰설비와 1m이상 이격했는가?	[전기첨부-6]전력 및 통신 인입 배선도 -이격거리: 1 m이상
		-지상파, 위성, FM방송 수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전기첨부-6] 반영	
전파법 제36조, 영 제59조	전파장애	방송수신의 보호	-본 건축물이 인근지역 방송국의 방송용 전파 송수신에 지장을 주는지 검토(협의) 하였는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주는 당해 수신 장애를 제거하여야 함.	-향후 민원 발생시 조치

조항	항목	대상	법규내용	검토결과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제17, 20조(별표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대상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 층중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는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를 설치하였는가?	-[전기첨부-7]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비 계통도 -이동통신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함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도면을 첨부하였는가?	-[전기첨부-7] -첨부함
	구내통신선로설비	구내통신설비설치	-주거용 건축물에는 단위 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이상 회선수를 확보하였는가?	-[전기첨부-2] -확보함
			-업무용건축물에는 업무구역(10㎡)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이상 회선수를 확보하였는가? -정보통신부에서 권장하는 정보화건축물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신청 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제9조(별표1,2)	구내통신실면적확보	설치기준	-공동주택은 규모별로 집중 구내통신실 (10㎡~25㎡) 면적을 확보하였는가?	-[전기첨부-8]ET-705_주인공동시설 통신 배선도 -확보면적: 29.60 ㎡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 이상인 업무용건축물에는 집중 구내통신실(10.2㎡ 이상) 및 층 구내 통신실 (5.4㎡~10.2㎡) 면적을 확보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	피뢰설비	설치기준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에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하였는가?	-[전기첨부-9]EE-601_접지 설비 SYSTEM BLOCK DIAGRAM -설치함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였는가?	-[전기첨부-9] -50m2이상으로 설치함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지면에서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였는가?	-[전기첨부-9] -설치함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였는가?	[전기첨부-9] -수평도체 설치함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였는가?	[전기첨부-9] -설치함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11조	주차장설비기준	설치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법 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가?	[전기첨부-10]ET-601~602_지하주차장 CCTV 및 비상벨 설비 평면도 -기준에 맞게 설치
			-벽면에서부터 50센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조도를 다음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가? ▶ 주차구획 및 차로 : 최소조도 10럭스 이상, 최대조도는 최소조도의 10배이내 ▶ 주차장 출입구 : 최소조도 300럭스 이상 최대조도 없음 ▶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 최소조도 50럭스 이상, 최대조도 없음	-[전기첨부-11]EE-501~502_지하주차장 전등설비 배선도 -기준에 맞게 설치함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전기설계도면	날인여부	-전기 설계도면은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	-도면에 도장 날인함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18,27조,시행규칙 제17,25조	설계도서설계감리	감리여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받아야 함. (공동주택 제외) -종합설계업무등록증 또는 설계감리자확인증 사본 -전기설계감리 계약서 또는 감리보고서 사본 -설계도서에 감리자가 날인하였는가?	해당사항 없음

조항	항목	대상	법규내용	검토결과
	에어컨 전용콘센트		-공동주택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 각 세대 또는 각 실마다 개별 냉방을 할 수 있도록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별도로 확보해 놓았는가?	-[전기첨부-12]EE-101~ 106_단위세대 전기설비 배선도 -각세대별 별도 회로적용
건축법시 행령 제87조	배전시설	설치기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전기사 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건축첨부-1] (AA-603~762 주동평면도) -가로 : 1.2M이상, 세로 : 2.4M이상 공간확보
부시장방침 (2002.12.5)	침수 방지대책	변전실	-배수펌프를 가동하기 위한 전용 비상발전기를 지상 층에 설치하였는가?	-[건축첨부-1] (AA-603~762 주동평면도) -설치장소 : 지하층
			-지하 변전실내 수·배전반 및 변압기 등을 집수정이 설치된 기계실 바닥 보다 최소 1m 이상 높게 설치 하였는가?	-[건축첨부-1] (AA-1002 지하주차장평면도) -단차 : 1m
			○ 배수설비 설계기준을 준수하였는가? 1.유사시 지하에 유입될 수 있는 수량 산정 -급수설비의 누출량 산정 시 적용 관내 유속 : 3m/sec 이상 -우수 유입량 산정시 최대강우량 : 시간당 최대 강우량 1.5배 이상 ※ 지하수 유출량이 있을시 유출예상량의 1.5배 이상 2.집수정의 유효용량 산정 : 최대 유입량의 15분 이상 유입량 3.배수펌프의 대수산정 : 집수정 유효용량을 10분안에 배수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3대 이상으로 분할 설치 4.배수펌프의 동력전원 : 비상전원으로 공급	-[건축첨부-1] (AA-1002 지하주차장평면도) -저수조실 집수정 Ø1.55(m)x1.2(h) 400(LPM)x2EAx1개소 -우수조실 집수정 Ø1.55(m)x1.2(h) 400(LPM)x1EAx4개소 -기계실 집수정 Ø1.55(m)x1.2(h) 400(LPM)x2EAx1개소 -지하주차장 집수정 Ø1.05(m)x1.2(h) 200(LPM)x1EAx9개소 -ELEV/PIT집수정 Ø1.05(m)x1.2(h) 50(LPM)x1EAx35개소

작성자 : 건축설계사 (주)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전 권 식 (인)
 전기설계사 (주)신명이앤씨 기술사 기 수 만 (인)
 확인자 : 발주처 공무원연금공단 대표 정 남 준 (인)

